

# 죽은 태아 [ ] 매장 [ ] 화장 신고서

※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일	처리기간	즉시	
부(모)	성 명		주민등록번호	-	
	주 소		전화번호		
	사산장소		임신주수		
	사산 연월일		사산사유		
	매장 또는 화 장 장 소				
신고인	성 명		주민등록번호	-	사산자(죽은 태아)와의관계
	주 소		전화번호		

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매장(화장)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  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제 호						
죽은 태아 [ ] 매장 [ ] 화장 신고증명서						
죽은 태아	임신주수		사산사유		사산연월일	
신고인	성 명		주민등록 번호	-	사산자(죽은 태아)와의관계	
	주 소		전화번호			
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(화장)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.						
년 월 일						
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						관인

처리 절차

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